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 월간 뉴스레터

2016년 7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 Contents

### 회계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07 호 ‘현금흐름표’ 개정 (안)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시행
- 금감원 「정부 3.0 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16.7.1 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 세무정보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신산업·신기술 세제지원 발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소식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안)(한국회계기준원, 2016.5.27)**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연계하는  
정보를 주석 공시**
**■ 현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의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음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함

**■ 주요개정내용**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연계하는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채의 기초와 기말 잔액의 차이를 조정

**<개정전>**

<b>&lt;재무상태표&gt;</b>			<b>&lt;현금흐름표&gt;</b>		<b>&lt;주석&gt;</b>	
	20X2	20X1		20X2	(비현금흐름)	20X2
<b>부채</b>			<b>재무활동 현금유입</b>		<b>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b>	
단기차입금	9,700	1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000	금융리스자산 취득	300
금융리스부채	3,500	4,000	<b>재무활동 현금유출</b>		(금융리스부채의 증가)	
외화사채	1,400	1,600	단기차입금 상환	(500)	<b>(사업결합)</b>	20X2
장기차입금	1,000	-	금융리스부채 상환	(800)	<b>취득일의 인수부채 공정가치</b>	
			외화사채 상환	(300)	단기차입금	200

**<개정후>**
**개정에 따른 추가 공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20X1 (기초)	재무 현금 흐름	비현금 변동			20X2 (기말)
			취득 (증가)	사업 결합*	환율 변동	
단기차입금	10,000	(500)	-	200	-	9,700
금융리스부채	4,000	(800)	300	-	-	3,500
외화사채	1,600	(300)	-	-	100	1,400
장기차입금	-	1,000	-	-	-	1,000
<b>재무활동 관련 총부채</b>	<b>15,600</b>	<b>(600)</b>	<b>300</b>	<b>200</b>	<b>100</b>	<b>15,600</b>

\* 중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2016년 하반기 공표 예정** ■ **시행일 및 경과규정**

‘16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보고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임.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최초 적용 시 비교목적으로 전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시행 (금융감독원, 2016.7.18)**

**추진배경** ■ **추진배경**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하였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

-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회사에 대한 조치 1)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

① 현황 및 문제점

-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방지 및 내부감시기구의 경영진 견제 역할강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외감법 개정\*으로 기존의 임원 외에 감사(감사위원)가 ‘주주총회 해임권고’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13.12월 개정, ’14.7.1. 시행)되었으나, 감사(감사위원)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오류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치기준 미비로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았음
- 한편,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하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168⑥)상 사업보고서에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동 보고서 상 의견에 대한 책임을 부담

## ② 개정내용

- 감사(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며,
  - (\*) 원칙적으로 이사보다 1단계 감경조치(고의시 제외)하고, 감리결과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치가 부실한 경우 회사에 개선권고 병행
-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
-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

## ③ 적용시기

시행일('16.7.18.)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2)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 ① 현황 및 문제점

-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 및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
- 그간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음

## ② 개정내용

-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중요도, 동기)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 ③ 적용시기

시행일('16.7.18.)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사시 전문가 활용 서식 개정**
**3)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사시 전문가 활용 서식개정**

- ① 현황 및 문제점
  -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도 필요
  - 외부감사가 해당 부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될 경우 신뢰성있는 결과 도출이 곤란하다는 비판 제기
- ② 개정내용
  -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 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정(즉시 시행)
- ③ 적용시기
 

시행일('16.7.18.)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방안**
**4)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방안**

- ① 진행경과
  -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과 관련,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잘못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16.3.25.)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기준에 대해 철회권고\*함에 따라 이번 양정기준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음
- ② 향후추진방안
  - 외감법 개정안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관련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16.6.10.)에서 통과됨에 따라
    -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감사 업무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등 조치 가능
  - 당초 금감원이 개정 예고한 양정기준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양정기준 개정)
    - ※ 금융위는 규제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 함

## 금감원 「정부 3.0 공시정보제공」 서비스 개시(금융감독원 2016.6.23)

## 추진배경

## ■ 추진배경

최근 상장회사 공시정보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공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 싶은 이용자들의 기대가 증가

- 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체 상장회사의 주요 공시정보를 한 번에 비교·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 금감원이 제공하는 재무정보 분석툴(\*)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대량의 재무정보 파일을 이용자 PC에서 손쉽게 분석할 수 있음

(\*)부채비율 산정 등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을 할 수 있는 예시용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주요정보 비교·조회

- (非재무정보) 최대 5개 회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非재무정보 6개 항목(\*)을 동시에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증자(감자) 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현황, 임원 현황, 직원 현황,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현황(5억원 이상)

- (재무정보) 최대 5개 회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및 주요 계정과목\*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재무상태표 9개 계정과목(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손익계산서 4개 계정과목(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 □ 재무정보 일괄 다운로드 및 손쉬운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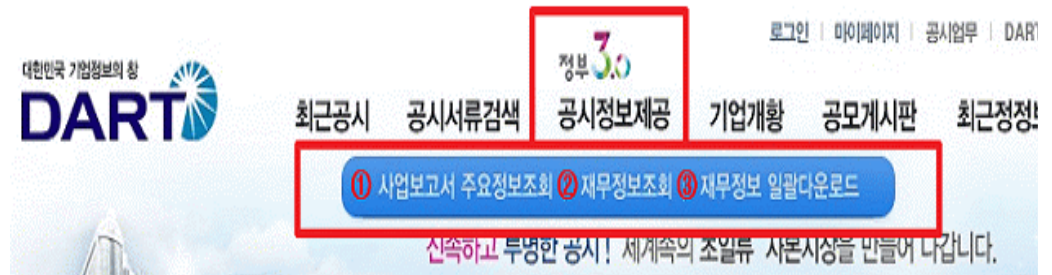
- 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일괄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분석 가능

※ "재무정보 분석툴"은 일괄 다운로드 받은 재무정보 파일을 활용하는 예시이므로 이용자는 엑셀 등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함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이용방법**

□ (접속방법) **DART 홈페이지**(http://dart.fss.or.kr) 상단 메뉴 중 「**정부3.0** 공시정보제공」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

\*①사업보고서 주요정보조회, ②재무정보조회, ③재무정보 일괄다운로드 3개로 구성

**[ 「정부3.0 공시정보제공」 메뉴 ]**


□ (제공방식) 메뉴별로 **화면조회**, **엑셀 다운로드**, **텍스트(TXT) 다운로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

**[ 메뉴별 제공정보 및 제공방식 ]**

메뉴명	제 공 정 보	제 공 방 식
① 사업보고서 주요정보조회	증자(감자)현황, 배당에 관한사항, 최대주주현황, 임원현황, 직원현황, <u>이사감사의</u> 개인별 보수현황	화면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② 재무정보조회	단일회사의 재무제표 및 최근3년간 주요계정정보, <u>회사간</u> 주요계정정보	화면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③ 재무정보 일괄다운로드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 <u>분석툴</u>	파일 다운로드 및 <u>분석툴</u> 다운로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16.7.1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금융감독원, 2016.6.28)**

추진배경

■ 추진배경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란?

회계법인 개황, 주요사업내용, 인원 현황, 재무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공동기금 현황, 소송현황 등 회계법인의 전체 현황을 기재한 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매년 6월말까지)에 증선위(금강원)와 한공회에 제출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정보이용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서식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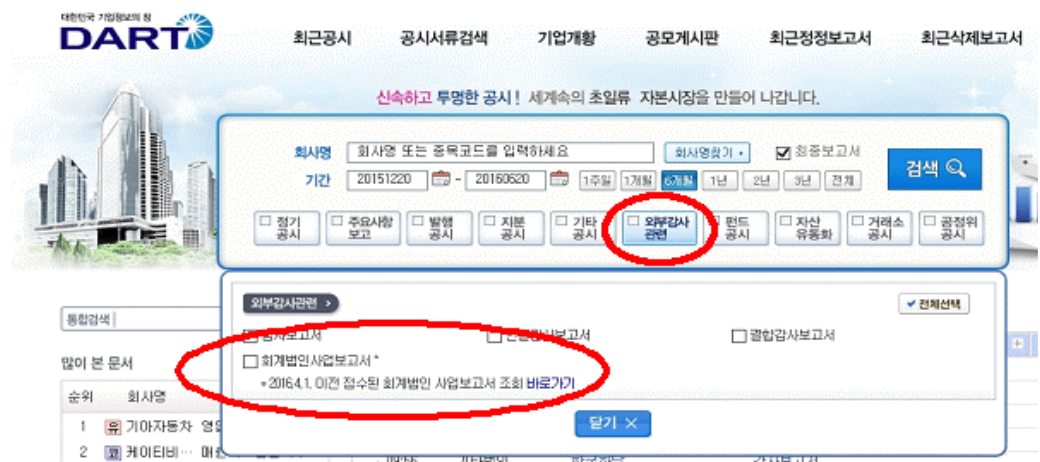
-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소송진행 현황 등을 반영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방법 개선

■ 공시방법 개선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접속

→ 검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명을 입력하여 사업보고서 확인





회계법인 사업보고  
서 서식 주요 개정  
내용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주요 개정내용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수요(needs) 충족
  - 회계법인의 소송진행 사건 등에 대한 주석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교육 시 주석작성 모범사례 제시)
  - 재무에 관한 사항의 공시범위 확대(수입내역 및 감사실적 등 세분화)
  
-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책임자 확인·서명) 및 회계법인간 비교가능성(표준재무제표 도입) 제고
  
-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등 기재 의무화
  -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소속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새롭게 정비토록 의무화한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기재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포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주요내용**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을 제외)
-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주요내용**
**한- 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5 월 16 일 ~ 19 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3 차 한- 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5 년 한- 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 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3 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한국은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 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
  -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
  - 부동산 주식 원천지국 과세: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 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금번 개정 한- 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의 최소기준 요건이 한국의 조세조약에 최초로 반영되었습니다.
  - ① (전문)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명확화
  - ② (조약 남용방지) 조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조약의 혜택 부인 가능
  - ③ (상호합의) 납세자는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 신청 가능
-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신산업·신기술 세제지원 발표**

- 2016년 6월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경제정책방향에는 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산업·신기술을 선정, 집중 지원(‘18년까지 80조원 규모 투자 전망)

-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 ⑤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 ⑧ 에너지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 \*미래성장동력 중 10대 우선추진분야, 5대신산업, 지역전략산업 등 반영

-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여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
  -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 하고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중소 30%, 중견·대기업 20% → 최대 30%)
  -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세액공제 신설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 유망 신산업·신기술의 세부 지원대상은 세법개정안에 확정·반영될 예정입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국조- 112, 2016.03.04.)

**■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정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 13 조 제 6 항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 2014 두 39784, 2016. 6. 10.)

■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통신회선망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내국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 7 조 및 법인세법 제 93 조 제 5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국조- 120, 2016. 3. 8.)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r/>(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